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역전만루홈런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런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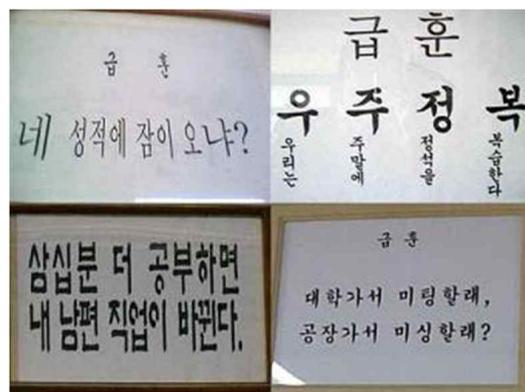
- 유하, 「학교에서 배운 것」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의 첫발

우리는 꿈꿉니다. 학교에서 삶 살이의 기본을 배울 수 있기를.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애를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불의를 보면 적어도 냉소라도 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사람이 하늘임을 익힐 수 있기를. 저마다의 차이가 환대받고 섞이는 기쁨을 배울 수 있기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에 가슴이 달뜰 수 있기를.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그런데 지금 한국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학교가 반인권과 반민주의 성역으로 저당 잡혀 있는 한, 한국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도 뿌리 내릴 수 없기에 학교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오직 성적만으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교육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학교 가는 학생과 교사의 발걸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저토록 비열하고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공교육'에서만큼은 다른 문화와 삶의 가치가 움틀 수 있도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조금은 더 경쾌하고 뿌듯해질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시민의 서명운동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이 위에서 내리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의 마음을 모아 학교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 단체들이 힘을 합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를 꾸린 이유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주민발의의 방식으로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무엇을 담았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조례안은 학생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학생인권의 현실이라는 숨결을 불어넣어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학생 지도 방식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술한 갈등과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의 새로운 기준 제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몇몇 결정문이 존재해 왔지만 공식적이고 통합된 학생인권 기준이 없다 보니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는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차별과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의견을 표현할 권리,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 구체적인 학생 인권의 기준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은 학생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실천계획 수립, 인권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단번에 학교현장에서 사라질 리는 없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무풍지대로 버텨온 학교 안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과 의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사, 학생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은 학생인권 구제 기구로서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고 그 옹호관의 권한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회복할 수단과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헛된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약자인 학생들이 믿고 기댈 만한 마땅한 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학교 재량'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해서 돌아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학부모에게 좀더 가까운 구제기구로 자리잡아 조례가 제시한 학생인권 기준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위기는 진보와 민주의 위기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주도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두려워하는 보수진영이 교육개혁의 흐름과 진보교육감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난장판 교실", "교사들 수난시대" 등 온갖 부풀려진 이야기들이 총동원됐습니다. 반면 인권의 가치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긍정적 변화들, 학생인권 정책을 반기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도 여러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학생에게 인권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서명운동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온라인 서명도 되지 않는 까다로운 서명절차,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법적 제한 등도 한몫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계를 갖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자가 무려 2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 소식에 비추어 보면 변명거리를 찾는 게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이 좌초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단지 학생의 인권만이 아닙니다. 주민발의 실패가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다. '서울시민 1%도 찬성하지 않는 진보'라는 보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진보의 무능을 탓하게 되는 상황은 더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에도 불뚱이 될 것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진보교육감의 여러 정책을 잡아 흔드는 구실 노릇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참담한 것은 청소년들이 진보와 기성세대의 '외면'을 지켜보게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촛불소녀에서 시작해 촛불노동자, 촛불유모차에 이르기까지 2008년 촛불의 기억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영감을 아로새겼습니다. 그 '촛불'을 일구어낸 주역은 다름 아닌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여전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학생들의 인권 수준은 갈수록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바로 진보교육감들, 그리고 생각하고 비판할 줄 아는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하자마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촛불'을 떠올린 까닭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은 자기에 관한 일인데도 법적 서명 권한이 없어 기성세대의 동참을 호소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진보와 기성세대에 대한 신뢰와 환멸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주민발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발의가 실패해도 교육청도 있고 의회도 있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발의가 실패한다면 교육청과 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보수진영과 여론에 떠밀려 추진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홍세화(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인) 님의 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남이 대신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주체적 시민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역전 만루홈런을 꿈꾸다

다행히 선거기간과 맞물려 서명 마감 기한이 5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서울시민 유권자의 1%, 8만1,88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무장 타오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신뢰할 만한 기성세대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들어갈 때 한국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지는 못해도 변화의 포문을 열리란 건 분명하다. 다시 2주간 역전만루홈런의 기회가 찾아왔다. 주민발의 방식이 함부로 길을 나선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루어두자. 바로 지금, 아직 서명하지 않은 서울시민은 주민발의 사이트(www.sturightnow.net)에 접속해 참여하면 되고 이미 서명한 사람은 한 사람씩만 더 모으면 된다. 무장 타오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신뢰할 만한 기성세대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직 늦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아니 위기에 처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멋진 역전만루홈런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www.sturightnow.net)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안내

학생인권, 행복교육의 시작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 취지

2008년 촛불집회의 주역이었던 청소년들!

사회 곳곳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운동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가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의 성공으로, 130만 서울 학생의 숨통을 틔워주세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 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힘으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

✓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 가고 싶어지는 학교, 진정한 소통과 교육이 존재하는 학교,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발판은 바로 '학생인권 보장'입니다.

✓ 학생을 학생답게? 아니 먼저 '사람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과 폭력을 거둬내고 소통과 반폭력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 학생인권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학생의 참여권 보장, 체벌과 폭력 금지, 두발·복장을 통한 개성 실현 보장, 보충수업·야자 강요 금지, 사생활과 정보인권 보호,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장애·성소수자·청소년노동자·운동선수·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 학교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 포함) 실시,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학생권리구제기구 설치 등이 담겨있습니다.

✓ 교육청이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게 더 학교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 학교에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집니다.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의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합니다. 학생의 몸과 인격을 무너트리는 체벌과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 이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평화적인 학교문화로 바꿀 것입니다.

▶ **차별받지 않은 권리와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 여성이라는 이유로,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차별. 학생인권조례가 차별 없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듭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등 소수학생이 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은 더욱더 낮춰질 것입니다.

☞ 학생들의 개성이 꽃핍니다.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규제, 용의복장 규제 등의 지금의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 하나하나가 다양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교에서 진행되는 0교시, 강제보충·야간학습은 학생의 아침밥과 잠을 빼앗아 학생들의 건강을 해쳤고, 무엇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빼앗았습니다. 0교시를 없애고 보충학습과 야간학습을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학생인권조례가 만듭니다.

▶ **친환경 안전 급식** : 무상급식조례가 추진된 사례처럼 학생이 친환경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급식 선정 과정과 운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 대화와 소통의 학교운영이 이루어집니다.

▶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들이 학교규정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의 주인은 교장선생님만이 아닙니다.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방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이 진행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보장을 책임지는 주체가 됩니다.

▶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실천계획 작성, 학생인권 옹호관 설치** : 학생인권침해의 당사자이자 방관자였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달라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상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인권신장을 위한 계획이 마련·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겨 학생인권에 전문적인 인사가 학생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학생인권조례로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의 주체가 됩니다.

☞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의 끈을 놓을 때 교사는 수업 연구와 학생 상담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제 보충과 강제 야자에서 벗어날 때 교사도 부당 노동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권을 보장받을 때 교사들의 교육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사로부터 존중받는 학생은 당연히 교사를 존중하여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서명 참여 방법 안내**

- 참여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단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 목표인원 : **약 81,885명 이상(서울시민의 1%)**
- 기한 : 2011년 4월 26일까지 (서둘러주세요! 2월부터 매달 3만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중요사항 : **자필로 서명한 서명용지 원본**이 필요합니다.(우편발송이 필요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첨부된 서명용지를 인쇄, 복사하여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량의 서명용지가 필요하신 분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02-365-5412)로 연락주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 **서명 방법**

- 청구인 서명 용지는 **1인당 1장씩** 작성하셔야 합니다.
- **짧은 선** 안만 작성하시면 되고, 반드시 자필로 기록합니다.
- 서명란에는 개인적으로 개발한 서명 말고 이름을 또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또박 또박** 기록해주세요. 날인은 인장(도장)이나 지장(무인) 모두 가능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를 모두 기록해주세요(아파트도 번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예 :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조례 제정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서명지 전달 방법**

- 반드시 **원본**을 학생인권조례서울본부 관련자나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 우편 보내실 곳 : (156-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다량의 서명지를 보내실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팩스는 안 됩니다.** 자필로 작성한 서명용지 원본이 필요합니다.

- ※ 서명양식, 서명 샘플, 홍보 리플릿 등 관련 자료는 아래 첨부했습니다.
- ※ 좀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urightnow.net> 을 참고하세요~
- ※ 각종 문의사항 :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017-214-3550)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인권은 교육과 민주주의의 주춧돌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청구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 서명요령 아래 굵은 선 안을 채워주세요.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2.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합니다.
3.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인장을 날인합니다. (서명은 꼭 정자로 써주세요)

번호			
성명		서명(정자) 혹은 날인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번호	-	서명날짜	201 년 월 일
핸드폰/전화		이메일	
비고			

※ 기입해주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본 서명운동에만 사용됩니다.
연락처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조례개정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 || 학생 역시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
- 폭력 없는 교육 || 체벌, 괴롭힘, 언어폭력, 성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육 || 학생의 의사존중/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 보장/ 자치활동 신장
- 차별 없는 교육 || 성, 장애, 가족형태, 경제적 지위, 성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장애·다문화·아르바이트청소년·운동선수·성소수자·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 개성과 사생활이 존중되는 교육 || 두발·복장 등을 통한 개성 실현/ 자의적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개인정보 보호
- 자발성의 교육 || 자율적 학습 보장/ 보충수업·야자 강제 금지/ 종교강요·서약강요 금지
- 돌봄의 교육 || 심, 안전, 건강, 안전한 먹을거리, 상담과 조력 등을 보장
- 인권을 상호존중하는 교육 || 인권교육 확대/ 학교·교육청의 책임 명시/ 학생권리구제기구 설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서명양식 샘플(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샘플)

굵은선 안을 채워서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서명날인은 싸인말고 또박또박 정자로 본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인권은 교육과 민주주의의 주춧돌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청구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 서명요령 아래 굵은 선 안을 채워주세요.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2.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이괄의 등은 단차명과 동과 층수를 기재합니다.			
3.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인장을 날인합니다. (서명은 꼭 정자로 써주세요)			

번호			
성명	홍길동	서명(봉자) 혹은 날인	홍길동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호		
주민등록 번호	81111 - 2001001	서명날짜	2010년 11 월 15 일
핸드폰/전화	016-235-5244	이메일	hong@sturightnow.net
비고			

* 기밀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철저한 보호되며 본 서명운동에만 사용됩니다.
연락처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조려제정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 : 학생 역시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 ● 폭력 없는 교육 : 체벌, 괴롭힘, 언어폭력, 성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육 : 학생의 의사존중/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 보장/ 자치활동 신장 ● 차별 없는 교육 : 성, 장애, 가족형태, 경제적 지위, 성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장애·다문화·이로바이 트칭소년·운동선수·성소수자·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 개성과 사생활이 존중되는 교육 : 두발·복장 등을 통한 개성 실현/ 지리적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개인정보 보호 ● 자발성의 교육 : 자율적 학습 보장/ 보충수업·아자 강제 금지/ 종교강요·서약강요 금지 ● 돌봄의 교육 : 심, 안전, 건강, 안전한 먹거리, 상담과 조력 등을 보장 ● 인권을 상호존중하는 교육 : 인권교육 확대/ 학교·교육청의 책임 명시/ 학생권리구제기구 설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자 격 서울시민 누구나 (단 19세 이상)

목표인원 약 81,885명 이상(서울시민의 1%)

중요사항_ 자필로 서명한 서명용지 원본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학생인권 지킴이가 되는 방법!

서울시민의 1%, 약 1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 조례제정 청구가 쉬운 절차는 아니지만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 주변 친구와 어른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 ▶ 서울운동본부에 꾸러진 청소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어요!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의견 수렴(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학생인권침해사례 수집 등), 선전 홍보(온라인 토론방운영, 캠페인 활동 전개, 토론회 등) 등의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 www.sturightnow.net
 전 화 : 02-582-8884
 이 메 일 : hrc3388@gmail.com
 주 소 : (156-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시대를 열자**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서울학교 만들기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명/운/동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이제 학교가 달라집니다.

‘학생인권조례’로 130만 서울 학생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체벌, 두발규제, 강제야자, 열악한 시설...

그동안 학교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학교현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한 학교 현실에서 학생은 자기 삶의 소중함과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달라져야 합니다. 무너져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는 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130만 서울학생들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서울교육은 가능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제정입니다.



학교에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집니다.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의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안합니다. 학생의 신체와 인격을 무너

트리는 체벌과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 이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평화적인 학교문화로 바꿀 것입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 여성이라는 이유,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차별, 학생인권조례가 차별 없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듭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등 소수학생이 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은 더욱더 낮춰질 것입니다.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규제, 용의복장 규제 등의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 개개인이 다양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학교에서 진행되는 0교시, 강제보충·야간학습은 학생의 이질감과 짐을 뜻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해쳤고, 무엇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빼앗겼습니다. 0교시를 없애고 보충수업과 야간학습에서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학생인권조례가 만듭니다.

대화와 소통의 학교운영이 실현됩니다.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들이 학교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학교의 주인은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방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을 책임지는 주체가 됩니다.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실천계획 작성,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이자 방관자였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달라 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상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인권신장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고 집행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겨 학생인권에 전문적인 인사가 학생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권고를 내 릴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의 끈을 놓을 때 교사는 수업 연구와 학생 상담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제 보충과 강제 야지에서 벗어날 때 교사도 부당 노동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권을 보장받을 때 교사들의 교육권도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사로부터 존중받는 학생은 당연히 교사를 존중하여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이 꽃피입니다.

